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8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정준호 · 이학영

김승원 · 강선우 · 이재정

윤호중 • 권칠승 • 안태준

허 영·전진숙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기, 공항, 철도 객차,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.

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하여 「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」에 따라 응급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

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 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).

##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(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한다)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7조의4(응급대기실 운영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응급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 설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-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. 1. ~ 6의3. (생 략) 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의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「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 관(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립 ·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에 한정한다) 7. (생략)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7조의4(응급대기실 운영 의무) <신 설>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립・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

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박물관및 미술관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응급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 설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인력과장비의 기준 등에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